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4293

발의연월일: 2022. 1. 7.

발 의 자:고용진·김경만·김수흥

김승원 · 김정호 · 김진표

박성준 • 박홍근 • 양경숙

윤후덕 • 이개호 • 이원욱

전재수 · 정성호 · 정일영

한병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월세액 세액공제제도는 월세 거주 저소득·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도에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신설하였으나 2014년도에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도 적용을 확대하여 현행에 이르고 있음.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종합주택 월세통합가격지수를 2017년 11월 기준(100)으로 볼 때 2020년 9월은 98.4, 2021년 1월은 99.1, 2021년 6월은 100, 2021년 11월은 102.3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이와 같은 월세통합가격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감안할 때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2019년 소득세 귀속기준으로 볼 때 전체가구의 23%수준이 월세가구에 해당되나 월세가구의 약 10%수준만 1가구당 평균 30만원 정도의 월세세액

공제를 적용받고 있음.

이와 같이 월세세액공제의 실효성이 낮은 주된 이유는 현행 소득세 과세제도에서 소득이 낮은 근로자 등은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 임.

현행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 과세를 위한 계산구조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공제를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뒤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대부분의 저소득·서민 월세가구의 경우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음.

또한, 당해연도의 세액공제액합계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제외하고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부금세액공제액과 같이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을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그 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1.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 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 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 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부금 세액공제액
- 2. 그 초과한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월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기간에 이월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 1항에 따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월세액 세액공제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
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	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
방법 등) ① 제59조의4제1항부	방법 등) ①
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	<u>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u> -
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	
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	②
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	
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	
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	
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	
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 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 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 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 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 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 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 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 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 다.

<신 설>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 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 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 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 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 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기부금 세액공 제액
2. 그 초과한 금액에 「조세특 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포함되 어 있는 경우 해당 월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제1항 단서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월세 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기간에 이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공제

월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월세액 세액